

일반계좌약관(변경전)	계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약관(변경후)	Remark
1. 머리말	1. 머리말	
1.1. 본 약관은 고객계좌개설신청서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개설된 각 계좌(“계좌”)에 적용되며, 고객과 씨티은행의 계좌개설 지침, 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습니다.	1.1 본 약관(아래 제1조 4항에서 정의됨)은 고객이 서명한 고객계좌개설 신청서 또는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기타의 방식으로 개설된 각 은행 계좌(이하 “계좌”)에 적용되며, 고객과 계좌가 개설된 씨티그룹의 직간접적인 은행 자회사(이하 “은행”)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은행이 하나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은행”은 계좌가 개설된 지점 또는 서비스(하단에 정의됨)가 제공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 약관은 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본 약관(또는 은행의 이전 계좌 약관)의 적용 대상임이 명시된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본 계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 약관(이하 “기본약관”)은 제9조에 기재된 기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약관 (이하 “개인정보보호약관”)을 포함하며, 개인정보보호약관은 그 규정된 한도 내에서 무역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약관의 신설을 포함한 본 약관의 적용 대상 및 장소에 대한 명확화
1.2. 본 약관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씨티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과 씨티은행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현지 약관 (“현지 약관”)에 의하여 보충되거나 변경됩니다.	1.2 본 기본약관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제공되는 계좌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과 은행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현지 약관(이하 “현지 약관”)에 의하여 보충되거나 변경됩니다.	용어변경(약관->기본약관) 및 적용대상 변경(계좌->계좌 및 서비스)
1.3. 이 약관과 현지 약관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현지 약관이 우선합니다. 이 약관이나 현지 약관과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상품(“서비스”)에 관한 약정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약정서가 우선합니다.	1.3 본 기본약관과 현지 약관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현지 약관이 우선합니다. 또, 기본약관이나 현지 약관이 상품설명서와 같은 서비스 관련 자료를 포함한 서비스와 관련된 약정서 또는 기타 약관(이하 “서비스 약정서”)과 상충하는 경우, 서비스 약정서가 우선합니다.	용어변경(약관->기본약관)
1.4. 고객은 어느 계좌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씨티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기타 정보를 씨티은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4 이 문서 내에서 “약관”이라는 용어는 기본약관, 현지 약관 및 서비스 약정서를 통칭합니다.	“약관”의 용어 정의 (기존 1.4조는 11.8조로 이동)
2. 권한	2. 권한	
씨티은행은 고객이 통신(아래에서 정의됨)을 발송하고 기타 행위를 하도록 (씨티은행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지정한 자의 권한을 신뢰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수권된 자료부터 지정한 사람을 변경하는 서면 통지나 기타 씨티은행에 만족스러운 서면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변경통지에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씨티은행은 변경 내용을 신뢰하기 위하여 경과하여야 하는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에 지정한 자의 권한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통신(아래에서 정의됨)을 발송하고 기타 행위를 하도록 (은행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서면으로 지정한 자의 권한을 신뢰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수권된 자료부터 지정한 사람을 변경하는 서면 통지나 기타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서면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변경통지에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은행이 변경 내용을 신뢰하기 위하여 경과하여야 하는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에 지정한 자의 권한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용어변경(씨티은행->은행)
3. 통신	3. 통신	
3.1. 고객과 씨티은행은 양자간의 문의, 통지, 및 지시(각 “통신”) 등 통신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안된 약정된 보안절차 (“보안절차”)를 준수합니다.	3.1 고객과 은행은, 고객이 은행 연결 채널로 접속하는 것을 인증하고, 문의, 데이터 및 기타 정보 교환, 통지, 거래 지시, 계좌 관리 지시와 같은 고객과 은행간의 통신(각 “통신”)의 출처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약정된 보안 절차(이하 “보안 절차”)를 준수합니다. 고객이 이용한 통신 방법에 따라, 보안 절차는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고유 거래 식별자, 전자 서명, 암호화 및 로그인 또는 기타 코드, 다중 요소 인증, 사용자 권한 부여, 부속서 검증 또는 고객이 동의한 기타 통신 수단 등. 수기이체거래(아래 3.4에 정의됨)와 관련된 보안절차는 해당 서	“보안절차”에 대한 구체화
3.2. 씨티은행은 통신절차에 포함된 바를 제외하고는 통신 발신인의 권한이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실수나 누락 또는 고객이 보낸 중복된 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비록 계좌명이 제시되더라도 오로지 계좌번호만을 참조하여 통신에 따른 지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 씨티은행은 통신에 따라 실행할 수 있습니다.	3.2 은행은 보안 절차에 포함된 바를 제외하고 통신 발신인의 권한이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할 의무가 없으며, 은행이 보안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통신 발신인의 권한이나 신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실수나 누락 또는 고객이 보낸 중복된 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비록 은행명 또는 계좌명이 제시되더라도 오직 은행코드 또는 계좌번호만을 참조하여 통신에 따른 지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은행이 통신에 따른 지시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고	- 통신에 따른 지시 실행 시, 참조 대상 추가(계좌번호->계좌번호 또는 은행코드) - 기존 3.3조: 일부 변경(사유에 관계없이 통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고객이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
3.3. 어느 통신의 내용, 권한, 출처나 통신절차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씨티은행은 통신에 따른 지시의 실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즉시 고객에게 그 결정을 (적절한 경우 전화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3 고객이 통신을 재발송,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이에 따르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고객은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 손실 및 기타 경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기존 3.4조의 내용 삽입 및 고객의 의무 추가
3.4. 고객이 통신을 재발송,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씨티은행은 이에 따르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4 은행이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수기이체거래 (“MIFT”)를 실행한 경우, 고객은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 손실 및 기타 경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기존 3.5조의 내용 삽입 및 표현 변경(수당 조작을 요하는 수단->수기이체거래)
3.5. 씨티은행이 수당 조작을 요하는 수단(즉, 전화, 텔레팩스, 텔레팩스, 전자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는 디스켓)에 의하여 발송된 통신에 따라 지시를 실행한 경우에 씨티은행이 정해진 통신과 관련하여 씨티은행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야 합니다.	N/A	N/A
4. 입금 및 출금	4. 입금 및 출금	
4.1. 씨티은행은 계좌에 인출초과상태를 초래(또는 초과인출액을 증가시키려는)하는 출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1 은행은 입금액에 상응하는 즉시 사용가능한 자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계좌에 대한 입금을 실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동 자금을 수령하기 전에 은행이 입금을 실행하는 경우, 은행은 (이자를 포함하여) 입금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고 계좌에 거래취소에 따른 적절한 기장을 할 수 있으며, 입금액이 이미 출금된 경우 해당 입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환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4.2조 - 일부 내용 변경(입금액 또는 출금액->입금액)

<p>4.2. 씨티은행은 입금액 또는 출금액에 상응하는 즉시 사용가능한 자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계좌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실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동 자금을 수령하기 전에 씨티은행이 입금이나 출금을 실행하는 경우, 씨티은행은 입금액이나 출금액의 전부나 일부(이자 포함)를 취소하고 계좌에 거래취소에 따른 적절한 기장을 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4.2 은행은, 고객의 지급 지시에 따라 또는 출금으로 귀결되거나 출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본 약관 조항에 따라 계좌에서 출금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계좌로부터의 총 출금액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즉시 사용가능한 자금 및 출금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신용 공여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출금을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출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p>	<p>- 기준 4.3조 - 모호한 용어의 변경(인출초과상태를 야기하거나 초과인출액을 증가->출금으로 귀결되거나 출금액을 증가)</p>
<p>4.3. 씨티은행은 인출초과상태를 야기시키거나 초과인출액을 증가시키는 출금을 실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계좌로부터의 총 출금액이 인출초과상태를 초래하거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즉시 사용가능한 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씨티은행은 어느 출금지시를 (전부 실행할 지 또는 일부만 순서대로 실행할 지 및 어떤 순서로 실행할 지) 실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p>	<p>4.3 은행과 고객이 서명한 약정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계좌나 서비스와 관련한 신용 공여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계좌의 해지 시 또는 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인출금액이나 기타 신용 공여액, 이자, 수수료 및 기타 지불 의무가 있는 금액을 총당하기에 충분한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을 은행에 이체하여야 합니다.</p>	<p>- 기준 4.4조 - 은행의 신용공여 취소에 대한 조건 강화</p>
<p>4.4. 씨티은행은 언제든지 신용 공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계좌해지 지시 및 기타 씨티은행의 요청시 계좌상의 초과인출금액이나 기타 신용공여액, 이자, 수수료 및 기타 부채액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의 즉시 사용가능한 자금을 씨티은행에 이체하여야 합니다.</p>	<p>N/A</p>	<p>N/A</p>
<p>5. 수표 및 지급증서 씨티은행은 수표, 지급증서 및 관련 자료를 고객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대하여 위조, 손실, 도난, 오용 또는 지급 거절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고객이 수표나 지급증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고객은 씨티은행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표, 지급증서 및 관련 서류를 씨티은행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p>	<p>5. 수표 및 지급증서 고객은 수표, 지급증서 및 관련 자료와 연관된 위조, 손실, 도난, 오용, 또는 지급거절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객은 수표나 지급증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서면으로 은행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표, 지급증서 및 관련 자료를 은행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p>	<p>- 일부 문구 삭제(씨티은행은 수표, 지급증서 및 관련 자료를 고객에 제공할 수 있으며)</p>
<p>6. 거래내역 및 통지문 고객은 거래내역이나 통지문은 고객에 우송되면 즉시 (어떤 경우에도 우송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래내역이나 통지서상의 오류를 씨티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p>	<p>6. 거래내역 및 통지문 고객은 거래내역이나 통지문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내역이나 통지문을 수령한 날 또는 그에 대해서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은행에 오류나 정정사항을 은행에 통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은행은 그런 통지의 지연으로 야기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 통지 기간 조건 완화(우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통지문을 수령한 날 또는 그에 대해서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통지 기간 이후의 통지시에 대한 조건 추가</p>
<p>7. 이자, 수수료 및 기타 금액 씨티은행은 고객에 통지된 이자율에 따라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은 고객이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수수료나 기타 금액을 해당 계좌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씨티은행은 언제든지 계좌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나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통지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함).</p>	<p>7. 이자, 수수료 및 세금 7.1 고객은 계좌와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수수료, 이자 및 기타 금액을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은행은 (통지에 관한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언제든지 수수료, 이자 및 기타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2 모든 수수료, 이자 및 기타 금액은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세금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금액("세금")에 대한 공제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은행 계열사가 그러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고객은 해당 금액을 즉시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7.3 고객은 이자 수입 및 기타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한 모든 세금의 납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당해 정부 요구(아래 제8조 4항에서 정의됨)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러한 정부 요구에 따라 해당 정부당국에 원천징수한 전체 금액을 적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러한 원천징수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7.4 고객은 정부 요구에 따른 고객의 세무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예를 들면, 고객의 거주 국가 또는 고객의 법인 분류의 변화, 또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 상실 또는 취득 등)가 있는 경우, 그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7.5 서면으로 달리 약정하지 않은 한, 은행은 수수료, 이자, 또는 은행에 지불되어야 하는 기타 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p>	<p>-FATCA 도입에 따른 관련 조건 추가</p>
<p>8. 이행 8.1. 씨티은행은 선의의 그리고 은행업계의 기준 및 관례에 따라 행해지는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씨티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통신, 결제 또는 지급시스템, 중개은행들(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의 업무수행은 항상 시스템의 규칙 및 규정과 (사전, 환원추심 및 신용장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제상업회의소가 공표한 업무수행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지침 및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p>	<p>8. 이행 8.1 은행은 은행업계의 기준 및 관례에 따라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은 통신, 결제 및 지급 시스템, 중개은행 또는 다른 기관(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이러한 시스템의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p>	<p>- 신용장 관련 문구 삭제</p>
<p>8.2. 고객과 씨티은행은 간접, 우발 또는 특별손해 및 손실(기대이익의 상실 포함)에 대하여는 비록 손실이나 손해 가능성을 통지받았을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8.2 고객이나 은행은 관련 손실이나 손해배상이 예측 가능하였거나 예상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한 당사자가 그러한 손실이나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을지라도 특별 또는 징벌적 손해, 간접, 우발, 또는 결과적 손실이나 손해, 또는 이익, 영업권, 사업기회의 상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 문구 추가(관련 손실이나 손해배상이 예측 가능하였거나 예상되었는지에 관계없이) - 손실 또는 손해의 구체화(간접, 우발 또는 특별손해 및 손실->특별 또는 징벌적 손해, 간접, 우발, 또는 결과적 손실이나 손해, 또는 이익, 영업권, 사업기회의 상실)</p>

<p>8.3. 계좌나 씨티은행의 신용장 또는 확인서와 관련된 씨티은행의 의무는 계좌가 개설되거나 신용장이나 확인서가 발행된 국가나 지역의 법률 (정부조치, 명령, 법령 및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장이나 확인서가 발행한 씨티은행의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그러한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만이 유일한 지급장소가 됩니다. 씨티은행은 오로지 계좌, 신용장 또는 확인서의 표시 통화로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p>	<p>8.3 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의 의무는 (i) 은행이 소재한 국가나 지역의 정부 요구의 적용을 받고, (ii) 지급의 유일한 장소인 은행에서만 그리고 은행을 상대로 해서만 집행될 수 있으며 은행의 다른 지점이나 계열사에서 또는 이들을 상대로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지급 시점의 계좌의 표시 통화로만 또는 정부 요구(아래 정의됨)가 달리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p>	<p>- 신용장 관련 문구 삭제</p>
<p>8.4. 고객의 계산으로 씨티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나 확인서와 관련된 고객의 의무는 본질적으로 일치되는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지급됩니다.</p>	<p>8.4 고객이나 은행은, 계좌나 서비스와 관련한 의무의 이행이(은행의 경우 계좌로부터의 지급이나 이체 요청을 포함) 자신, 자신과 관련된 지점, 계열사, 또는 시스템에 의해 정부 요구의 위반을 초래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해 금지, 방해 또는 지연되는 경우,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은 동 의무 이행이 중지됩니다(또한 은행의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은 다른 지점이나 계열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은행과 관련된 지점 또는 계열사는 경제적 제재나 정부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또한 다른 지점이나 계열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예를 들면, 환전이나 자금이체의 제한, 징발, 비자발적 이체, 시스템의 사용불능, 태업, 화재, 홍수, 폭발, 천재지변, 정부 요구, 소요, 파업 또는 기타 정의 행위, 폭동, 반란, 전쟁 또는 정부나 유사 기관의 조치와 같이 관련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정부 요구"는 (1)정유 가능한 법률이나 규정, (2)사법 당국, 정보기관, 규제 당국 또는 이와 유사한 당국의 요구나 지침, 또는(3) 은행과 정부 당국 사이에 체결되거나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부 당국 사이에 체결된 계약 등을 의미합니다(그러한 법, 규정 또는 당국은 국내 및 국외를 포함합니다).</p>	<p>- 기존 8.4조 삭제(신용장 관련 문구) - 기존 8.5조 도입 1. FATCA 도입에 따라 기존 문구 변경(국가나 당국의 법률, 규정이나 기타 요건-> 정부 요구(별도로 정의됨)) 2.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 의무 불이행 추가 (경제적 제재나 정부 요구를 준수할 위한 경우)</p>
<p>8.5. 씨티은행이나 고객은, 그 의무의 이행이 각자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나 당국의 법률, 규정이나 기타 요건의 위반을 초래하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의무이행이 금지, 제한 또는 지연됨으로 인하여 어떤 계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만 동 의무이행이 중지 됩니다(또한, 씨티은행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은 다른 지점, 자회사나 계열회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사유"란 환전이나 이체에 대한 제한, 징발, 강제적인 이체, 통신시스템의 불능, 태업, 화재, 홍수, 폭발, 자연재해, 시민봉기, 파업 등의 정의행위, 반란, 폭동, 전쟁이나 정부조치 등 해당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한 사유를 말합니다.</p>	<p>8.5 이 약관의 다른 조항의 효력을 침해함이 없이, 이 약관 제 8조는 계약 위반, 불법행위 및 그와 유사한 행위로 인한 각 당사자에 대한 배상 청구를 포함하여 이 약관에 규정된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과 은행의 모든 권리와 의무에 적용됩니다.</p>	<p>- 신설조항</p>
<p>9. 고객 정보 씨티은행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법률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씨티은행은 대고객 서비스 제공(데이터 프로세싱, 통계 및 위험 분석 목적)과 관련하여 기밀 유지를 전제로 한 사용을 위하여 고객 정보를 각처에 소재하는 씨티은행의 지점, 자회사, 출장 사무소, 계열회사, 대리인 및 이들이 지정하는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과 각 지점, 자회사, 출장 사무소, 계열회사, 대리인이나, 제 3 자는 법률, 법원, 감독기관이나 법적절차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p>	<p>9. 고객 정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의 기밀유지에 관련된 각 당사자의 책임은 개인정보보호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약관은 참조를 통해 본 약관에 포함됩니다.</p>	<p>- 개인정보보호약관(CDPC) 신설하며, 기존 9조를 별도의 약관으로 대체함</p>
<p>10.계좌해지 ; 해제 10.1. 씨티은행이나 고객은 언제라도 계좌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단, 통지서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함) 10.2.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씨티은행은 이 약관 및 현지 약관의 조건에 따라 해지 당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즉시 사용가능한 자금을(이자와 함께) 고객에 지급하며, 고객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씨티은행이 제공한 모든 관련 정보 및 장비를 씨티은행에 반환하여야 합니다.</p>	<p>10. 계좌의 해지: 거래종료 10.1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달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한, 은행이나 고객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좌를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0.2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은행은 본 약관에 따라 해지 당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모든 최종 정산 자금을(이자와 함께) 고객에 지급합니다.</p>	<p>계좌 해지(서비스의 종료) 요건 강화 계좌해지서 고객업무 조항 삭제</p>
<p>11.일반 사항 11.1. 고객이나 씨티은행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약관이나 현지약관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에 대한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거나 지연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단, 씨티은행은 대 고객 서비스 제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점, 자회사나 계열회사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p>	<p>11. 일반 사항 11.1 고객이나 은행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그러한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거나 지연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 대 고객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은 다른 지점이나 계열사에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양도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p>	<p>양도시 고객에 대한 통지유 무 추가</p>
<p>11.2. 이 약관이나 현지 약관의 어느 규정이 관련 법령상 처음부터 또는 사후에 위법, 무효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이나 현지약관의 (다른 법령상 유효한) 나머지 조항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유효합니다.</p>	<p>11.2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관련 법령상 처음부터 또는 사후에 위법, 무효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는 경우에도 본 약관의 (다른 법령상 유효한) 나머지 조항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유효합니다.</p>	<p>변경사항없음</p>

11.3. 고객이나 씨티은행이 이 약관이나 현지 약관상의 권리나 구제책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는 권리 행사의 포기라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리도 구체적인 특정 경우에 한정하여 포기됩니다.	11.3 고객이나 은행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나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권리 등의 포기라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리도 구체적인 특정 경우에 한정하여 포기됩니다.	변경사항없음
11.4. 고객과 씨티은행은 서비스의 보안과 양질의 서비스의 제공 목적상 전화나 전자 감시 또는 녹음에 동의하며, 각 당사자가 이 약관이나 현지약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절차에서 전화나 전자 녹음이나 컴퓨터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1.4 고객과 은행은 보안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화나 전자적 모니터링 또는 기록에 동의하며, 각 당사자가 본 약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절차에서 전화 또는 전자적 기록이나 컴퓨터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변경사항없음
11.5. 서면 통지는 계좌개설신청에 기재된 고객의 주민 주소지 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최근 거래내역서상의 씨티은행의 주소지 (또는 통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기타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통지는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11.5 서면 통지는 (i)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고객의 주요 사업장 주소지 또는 해당 계좌에 대한 가장 최근의 거래내역서 상 은행 주소지로 전달되는 경우, 또는 (ii)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기타 주소(전자적으로 전송되는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포함)로 전송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달리 약정하거나 현지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지는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통지가 가능한 주소 추가(전자적으로 전송되는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
11.6. 씨티은행은 해당 통화에 대한 환전 실행 당시의 환율환율로 환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1.6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서면" 및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본 약관에 사용될 시, 해당 단어는 이메일, 팩스, 디지털 이미지 및 복사본, 기타 유사한 전자 형태를 포함한 종이 및 전자 양식을 지칭합니다.	신설
신설	11.7 서면으로 달리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은행은 환전 시점, 거래 규모 및 거래 유형에 비추어 합리적인 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할 수 있습니다.	- 기존 11.6조 - 은행의 임의 환율 적용요건에 대한 강화
신설	11.8 고객은 계좌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의해 합리적으로 요청된 모든 문서와 기타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기존 1.4조
신설	11.9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i) 본 약관의 체결 및 이행목적 상 필요한 모든 적절한 동의, 승인 및 권한을 획득하였고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ii) 본 약관의 체결 및 이행이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신설
12. 준거법; 관할; 면책	12. 준거법; 관할; 면책	
12.1. 이 약관과 해당 현지약관은 당해 계좌가 개설된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12.1 계좌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은 계좌가 개설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나 지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 개별약정 우선 조항 추가
12.2. 계좌가 개설된 국가나 지역의 관할법원은 이 약관이나 해당 현지약관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 비전속적인 관할을 가지며, 고객과 씨티은행은 이 법원들의 관할에 취소불능적으로 따르기로 합니다.	12.2 계좌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계좌가 개설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나 지역의 법원은 본 약관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심리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며, 고객과 은행은 해당 법원의 사법관할권을 최종적으로 따릅니다.	- 개별약정 우선 조항 추가 - 일부 표현 변경(비전속적인 관할->배타적 관할권 / 취소불능적으로->최종적으로)
고객과 씨티은행은 법적절차나 집행으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12.3 고객과 은행은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책, 특정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책 및 이에 대해 주어지는 모든 형태의 구제와 관련된 면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모든 면책 특권을, 주권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한 수준까지 포기합니다.	면책 조건의 구체화